

3

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

■ 아래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전 계획(안)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후 일부 타입,평면,세대수, 특별공급배정세대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(단위: 세대)

구분	주택형 (전용면적기준)	국가 유공자	장기복무 제대군인	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	중소기업 근로자	장애인			소계	비고
						경 기	인 천	서 울		
74A	74.9423A		1 (1)		1 (1)				2 (2)	괄호안() 세대수는 예비세대 수
71B	71.6421B	1 (1)		1 (1)	1 (1)				3 (3)	
74C	74.9945C	1 (1)	1 (1)	1 (1)			1 (1)		4 (4)	
74D	74.9928D			1 (1)				1 (1)	2 (2)	
74EW	74.8978EW	1 (1)	1 (1)		1 (1)				3 (3)	
74EE	74.8978EE			1 (1)		1 (1)			2 (2)	
합계		3 (3)	3 (3)	4 (4)	3 (3)	3 (3)			16 (16)	

※ 해당 추천기관은 예비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.

4

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■ 대 상 자: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년 06월02일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. 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.

■ 자격요건: 청약통장(청약예금, 청약부금, 주택청약종합저축) 가입기간 6개월 경과 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청약통장 제외.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추천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)

-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